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37577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3757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46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호

피고, 피상고인 1. C

2. D

판결 선고 2020. 2. 27.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4684 판결

주문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상고와 원고 B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상고와 원고 B의 상고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1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상고와 원고 B의 상고는 본안 재판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고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만 상고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상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은 피고 D이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감정,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이 한 소송비용 재판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 재판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본안 재판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으므로, 원심이 한 소송비용 재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상고와 원고 B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동원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